

	사 규 명	<h2>자율분쟁조정협의지침</h2>	분 류	사무 및 문서
			사규번호	사무-B-21
			기안부서	법무실
			최초제정	2023.10.16
			최종개정	2023.10.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회사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하도급거래 사업자간의 신뢰구축과 상생협력을 기본으로 한다. 회사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분쟁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에 성실히 협력한다.

제2조 (기능)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회사와 하도급거래 사업자간 의사소통 체계와 분쟁의 자율적 사전 해결기제로서의 기능을 한다. 즉, 자율분쟁조정기구는 회사와 하도급거래 사업자에게 계약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그 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하도급거래 사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분쟁이 증폭되기 전에 법원이나 공정거래조정원 등 제3의 공적기관에 의한 해결이 아닌 회사와 하도급거래 사업자 스스로의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소한다.

제2장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구성 및 위원의 자격)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공정거래 CP 자율준수관리자로 한다.

1.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위원 구성은 하도급거래 원사업부서 대표 1인 이상과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1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원사업부서 대표위원과 수급사업자 대표위원의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2. 위원장과 위원은 상호동의로 선정하고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자율분쟁조정협의회 회의를 주재하는 자로서, 하도급거래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하도급분쟁조정 경험을 보유해야 하며, 반드시 원사업부서

- 원이나 수급사업자가 아닌 독립적인 공정거래 CP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 한다.
4. 원사업부서 대표 위원과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분쟁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자로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5. 위원장이나 위원이 분쟁 당사자와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제척, 기피, 회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위원 또는 위원장의 제척, 기피, 회피, 사퇴 등으로 인해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분쟁 조정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대리인 선정 등의 절차를 마련한다.
 6. 협의회는 CP공정거래 전담부서에서 운영하며, 조사, 회의진행 등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 (자율분쟁조정협의회 회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사전에 정한 주기에 따라 개최하며,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안의 의결, 분쟁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의 거부, 중지 또는 종료 결정, 분쟁조정기구 운영규정의 제개정 등을 다룬다.
2. 수시회의는 급박한 사안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하며, 급박한 사안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안의 의결, 조정절차의 거부, 중지 또는 종료 결정, 그밖에 정기회의 일정까지 대기할 경우 분쟁조정이 불가한 사안 등을 다룬다.
3. 협의회 전담부서는 정기회의나 수시회의 진행에 대하여 일체 경비 등을 사전에 예산확보를 통해 진행한다.

제5조 (기록물 등의 보관과 비밀엄수 의무)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관련된 문서의 보관과 비밀엄수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위원에 상정하는 의결, 보고사항, 조정권고안, 합의서 등을 문서로 등록하여 3년이상으로 하되 사전에 정한 보존 기한 동안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위원장과 위원 및 자율분쟁조정협의회 회의 참석자는 회의에서 취득된 모든 정보들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조정대상 안전)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이 하도급법 관련 위반, 계약해제, 손해배상, 계약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한다.

1. 하도급거래와 관련 필수서류 미제공, 허위, 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불이익 제공 등 하도급거래 법 위반
2. 기타 운영위원회가 자율분쟁조정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원가(환율, 원자재가변동, 인건비) 등의 변동)

제7조 (분쟁조정의 절차)

자율분쟁조정의 절차는 ① 신청서 접수, ②기초조사, ③사전협의, ④접수통지, ⑤심의 진행, ⑥조정 권고안 제시, ⑦ 당사자 통지의 7단계로 이루어진다.

1. 자율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당사자들은 조정신청 시 관련 정보와 신청사유를 적시한 서면을 신청서를 근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부서의 기초 조사 전 신청서 접수 내용을 검토한다. 다만,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부서는 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이 있기 전 또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공적분쟁조정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2.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부서는 신청서에서 나타난 사항에 대해 접수 후 15일 이내에 사전에 정한 기간 이내에 분쟁 사실 관련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끝난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급박한 상황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절차를 생략하고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부서는 기초조사 진행 시 분쟁 당사자들이 사전조정을 거쳤는지 확인하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추가협의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보고를 받은 즉시 위원 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준비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되 가능한 빠른 회의일정을 결정하여 사전에 정한 기간 내에 당사자들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한다.
5.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는 운영위원 전원출석으로 개의하며, 심의 시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 및 위원이 이에 대하여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위원들은 심리 중이거나 심리가 끝난

후에도 당사자들에게 유불리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6. 심의가 종결되면 원칙적으로 위원들의 전원합의로 조정권고안을 결정한다.
7.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조정 권고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며, 당사자들은 권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 사전에 정한 기간 이내에 수용여부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8. 당사자들이 조정권고안을 수용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서를 작성하며, 일반 당사자라도 조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 조정이 불성립된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한다.

제9조 (분쟁조정 기간)

분쟁조정기간은 분쟁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사전에 정한 기간 이내로 하되, 분쟁 당사자들 간에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분쟁조정 종료 후의 조치)

분쟁조정 종료 후 당사자들 및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당사자들이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당사자들은 조정 권고안을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2. 당사자들이 조정권고안을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당사자에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적 분쟁조정절차를 안내하며, 일방이 소 제기를 하거나 공적 분쟁조정절차를 신청한 경우 당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율분쟁조정협의회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분쟁 조정 중에도 또한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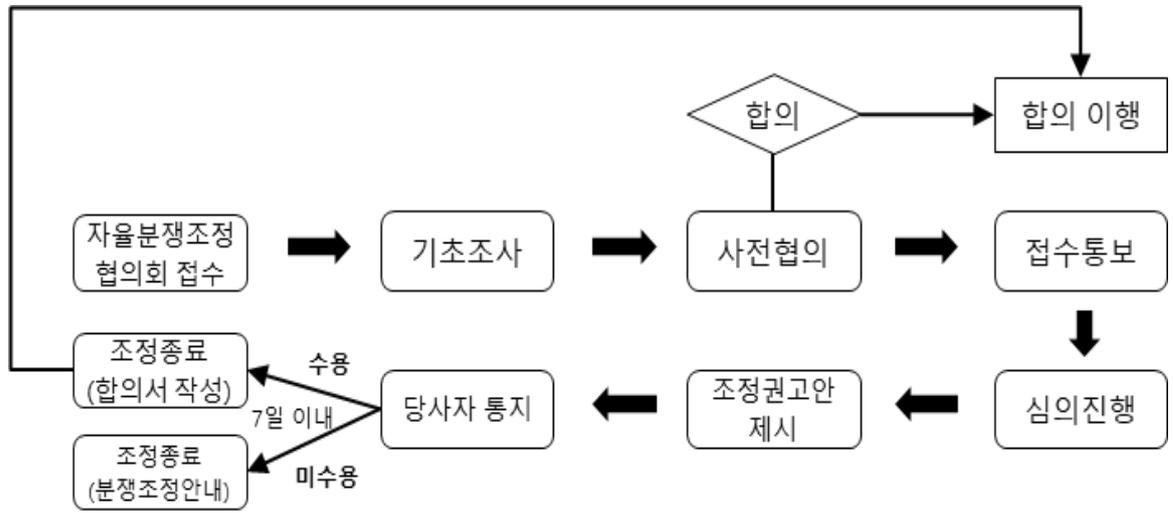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별첨1.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절차도

(별첨 1) 자율분쟁조정협의 절차도



참 고